



제422회 국회(임시회)  
제2차 보건복지위원회

#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# 검 토 보 고

〈응급의료 전용회선 개설 및 운영〉

■ 이수진의원 대표발의(의안번호 제7604호)

2025. 2.

보 건 복 지 위 원 회

전문위원 오세일



# 목 차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I . 개요 .....               | 1 |
| II . 주요 내용별 검토 .....       | 2 |
| 1. 응급의료 전용회선 개설 및 운영 ..... | 2 |



## I. 개요

### 1. 이수진의원 대표발의안(의안번호 제7604호)

#### 가. 제안경위

(1) 제 안 자 : 이수진의원 등 11인

(2) 제 안 일 : 2025. 1. 17.

(3) 회 부 일 : 2025. 1. 20.

#### 나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정부는 응급환자 이송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‘핫라인’ 신설을 대책으로 내놓았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.

그 결과 분초를 다투는 응급상황에서 응급환자 수용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응급실 전화는 안내 음성으로 연결되거나 상담원이 전화를 받아 응급실로 연결시켜주는 등 확인시간이 지체되어 응급환자가 제때 응급처치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.

이에 응급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자와의 통신을 위한 전용 수신전화번호를 개설·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응급환자 수용능력을 신속하게 확인하여 응급환자를 이송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48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).

## Ⅱ. 주요 내용별 검토

### 1. 응급의료 전용회선 개설 및 운영

#### 가. 개정안의 내용

- 개정안은 신속한 응급환자 수용능력의 확인 및 인계를 위하여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자와의 통신을 위한 전용수신전화번호(이하 “응급의료 전용회선”)를 개설·운영하고 응급의료 전용회선의 담당부서를 지정하거나 담당인력을 배치하며,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의료 전용회선을 개설·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48조의2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).

| 현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정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48조의2(수용능력 확인 등) ①<br>· ② (생략)<br><u>&lt;신설&gt;</u> | 제48조의2(수용능력 확인 등) ①<br>· ② (현행과 같음)<br>③ <u>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신속한 응급환자 수용능력 확인 및 인계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자와의 통신을 위한 전용 수신전화번호(이하 “응급의료 전용회선”이라 한다)를 개설·운영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응급의료 전용회선을 상시적으로 운영할</u> |

| 현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정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p>&lt;신설&gt;</p> <p>&lt;신설&gt;</p> <p>③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, 방법,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</p> | <p>수 있도록 담당부서를 지정하거나 담당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.</p> <p>④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응급의료 전용회선 개설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</p> <p>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의료 전용회선을 개설·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과-----<br/>-----<br/>-----.</p> |

## 나. 검토의견

- 응급의료기관은 그 규모 및 역할 등에 따라 권역응급의료센터(이하 “권역센터”), 지역응급의료센터(이하 “지역센터”), 지역응급의료기관(이하 “지역기관”)의 종류로 나뉜다<sup>1)</sup>.

1)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5. “응급의료기관”이란 「의료법」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, 전문응급의료센터,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.

제29조(전문응급의료센터의 지정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소아환자, 화상환자 및 독극물중독환자 등에 대한 응급의료를 위하여 권역응급의료센터, 지역응급의료센터 중에서 분야별로 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.

□ 응급의료기관은 법 제17조제1항<sup>2)</sup>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평가(이하 “평가”)를 받고 있으며, 평가 결과는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보조금·수가 차등 지원, 행정처분과 같은 보건복지부의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의 근거가 됨. 평가지표에는 ‘이송 및 전원 의뢰를 위한 유·무선 핫라인 설치·운영’ 지표가 포함되어 있어, 응급의료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응급의료 전용회선을 개설·운영하고 있음.

- 보건복지부가 2025년 1분기에 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412개 전체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의료 전용회선을 운영 중임.

\* 권역센터(44개)·지역센터(136개): 유·무선 응급의료 전용회선 운영

\* 지역기관(232개): 유·무선(212개), 유선(19개), 무선(1개) 응급의료 전용회선 운영

※ 무선만 운영 중 기관(1개): 2024년 11월 신규 지정기관으로, 2025년 1분기 내 유선 설치 예정

□ 또한 응급의료기관의 유형별 지정기준은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고, 시행규칙에서는 지정기준의 내용 중 하나로 인력기준을 포함하고 있는데<sup>3)</sup>,

권역센터 및 지역센터는 응급의료 전용회선 운영과 같은 응급의료 정보 관리 및 제공 업무에 대한 전담인력(권역센터 2명, 지역센터

「의료법」

제3조(의료기관) ① 이 법에서 “의료기관”이란 의료인이 공중(公衆)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·조산의 업(이하 “의료업”이라 한다)을 하는 곳을 말한다.

2)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

제17조(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기관등의 시설·장비·인력, 업무의 내용·결과 등에 대하여 평가를 할 수 있다. 이 경우 평가 대상이 되는 응급의료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평가에 응하여야 한다.

3) <응급의료기관 유형별 응급의료 전용회선 전담인력 규정>

| 유형   | 근거(동법 시행규칙)     | 인력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권역센터 | 제13조제2항 및 별표5의2 | 간호사, 응급구조사 또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면허·자격을 가진 사람 2명 이상 | 응급의료 정보 관리 및 제공 업무를 전담할 것 |
| 지역센터 | 제17조제2항 및 별표7   | 간호사, 응급구조사 또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면허·자격을 가진 사람 1명 이상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지역기관 | 제18조제1항 및 별표8   | -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관련규정 없음                   |

1명)을 두어야 하고, 기타 지역기관은 의무적으로 두어야 하는 인력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자체적으로 응급의료 전용회선에 대한 일반 담당인력을 두고 있음.

□ 개정안에 따를 경우 현재 실시 중인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 전용회선 개설·운영 및 응급의료 전용회선의 담당인력 배치가 법률에 근거를 두게 됨으로써,

실시의 준수가 보다 강제화되고 지역기관의 응급의료 전용회선 담당인력 운용이 체계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.

- 다만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응급의료 전용회선의 담당인력이 정책 실시과정에서 일반 담당인력이 아닌 전담인력의 성격으로 적용될 경우,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지역기관은 별도의 전담인력 채용 등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임.

□ 한편, 개정안에서 응급의료 전용회선의 담당인력 배치가 응급의료기관의 법정의무사항으로 규정되며 현재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에서 제외된다면, 다음과 같은 지정기준 미준수에 따른 조치 등의 적용에서도 제외됨.

- 지정기준 미준수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지정취소(법 제31조의3제1항제1호4) 및 과태료(법 제30조제1항제1호5)

- 재난 등으로 인한 응급의료기관 인력기준의 예외 인정(법 제31조의2제4항6)

---

4)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

제31조의3(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)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3년마다 해당 지정권자가 지정한 모든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
1. 제31조의2에 따른 지정기준의 준수

제31조의2(응급의료기관의 운영) ① 응급의료기관은 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라 시설, 인력 및 장비 등을 유지하여 운영하여야 한다.

5)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

제62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1. 제31조의2를 위반하여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른 시설·인력·장비 등을 유지·운영하지 아니한 자

6) 제31조의2(응급의료기관의 운영) ① 응급의료기관은 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기관의

- 따라서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개정문을 규정하고 하위법령을 정비함에 있어 이와 같은 점을 유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.

## 다. 관계 기관 및 단체 의견

- (보건복지부) 현재의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통한 응급의료 전용회선 개설·운영 및 시행규칙을 통한 권역센터·지역센터의 전담인력 배치의 준수를 보다 강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. 다만, 지역기관도 응급의료 전용회선의 전담인력을 배치해야 한다면 운영의 어려움이 우려되므로 지역기관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음.
- (대한병원장 협의회) 응급의료 전용회선의 개설·운영은 응급환자 이송 문제에 관한 근본적 해결책으로 보기 어렵고, 응급의료 전용회선과 담당인력에 대한 별도의 재정지원이 없다면 응급의료기관에 인력 채용 등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음.
- (대한응급의학회) 개정안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 전용회선 담당인력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야 함.
- (한국환자단체연합회) 개정안에 찬성함.

문 의 처

02)6788-5509

지정기준에 따라 시설, 인력 및 장비 등을 유지하여 운영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, 감염병 유행 등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하여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라 시설, 인력 및 장비 등을 유지하여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.